

의안번호	제 2009 - 14 호
의 결 연 월 일	2009. 5. 7. (제18차 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 목 차

I. 양형기준 설정 경과 보고 .....	1
1. 추진 경과 .....	1
가.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준비 .....	1
나. 양형기준의 설정 .....	1
2.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2
3. 양형기준의 특징 .....	2
가. 유형구분을 통한 합리적인 형량범위 제시 .....	2
나. 구체적 양형인자와 평가원칙 제시 .....	2
다. 경합범 및 집행유예 기준 설정 .....	3
4. 개별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 .....	4
가. 살인범죄 양형기준 .....	4
나. 뇌물범죄 양형기준 .....	4
다. 성범죄 양형기준 .....	5
라. 강도범죄 양형기준 .....	6
마.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7
바. 위증·무고범죄 양형기준 .....	8
5. 시행 계획 .....	8
II. 2009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 보고 .....	8
1. 개요 .....	8
2. 전문위원 연구계획 .....	8
가. 제1주제 .....	9
나. 제2주제 .....	9

---

다. 제3주제 .....	10
라. 제4주제 .....	11
마. 제5주제 .....	11
바. 제6주제 .....	12
사. 제7주제 .....	13
아. 제8주제 .....	13
자. 제9주제 .....	14
3. 연구계획안 정리 .....	15
가.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	15
나.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에 따른 위원회 안건(예상) .....	15
III. 향후 일정 .....	16

별첨 양형기준(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  
양형기준 해설



# I. 양형기준 설정 경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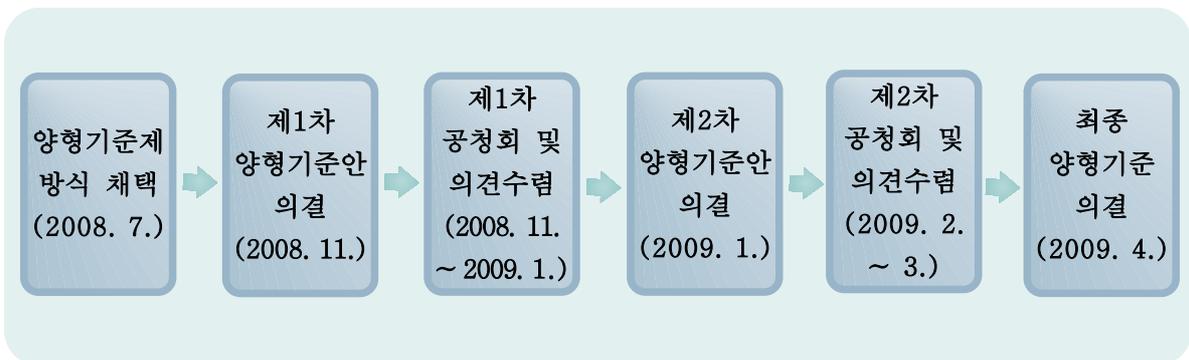
## 1. 추진 경과

### 가.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준비

- 외국 양형제도 연구
- 약 43,000건의 과거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 일반인과 전문가의 양형에 대한 인식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공개토론회(2008. 6.)

### 나. 양형기준의 설정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심의·의결(2008. 7.)
- 의결된 양형기준제 방식을 토대로 양형기준안 작성 연구
- 공청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양형기준 최종 의결(2009. 4. 24.)



#### ※ 공청회 개최 현황

- 제1차 공청회 : 살인, 뇌물, 성범죄(2008. 11. 24.)
- 제2차 공청회 : 강도, 횡령·배임, 위증·무고범죄(2009. 2. 6.)

## 2.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제1기 양형위원회(2009. 4. 26.까지)는 우선적으로 아래 범죄군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
  - 살인범죄 : 범죄의 중대성 및 양형기준의 상징성 고려
  - 뇌물, 성범죄 : 높은 사회적 관심 반영
  - 강도범죄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대범죄인 점 고려
  - 횡령·배임범죄 : 화이트칼라 범죄의 적정 양형에 대한 국민적 요청 반영
  - 위증·무고범죄 : 신뢰받는 재판문화 정착을 위한 필요 고려

## 3. 양형기준의 특징

### 가. 유형구분을 통한 합리적인 형량범위 제시

- 범죄별 특성을 살려 유형을 분류한 다음 각 유형별로 세분화된 형량범위를 제시
  -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형종 및 형량범위, 즉 책임의 경중에 차이가 발생하도록 유형 분류
- 각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의 3단계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중첩 구간을 설정
  - 양형실무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기초로 하되,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범죄는 규범적 조정을 가하여 형량범위 설정

### 나. 구체적 양형인자와 평가원칙 제시

- 범죄별로 법관이 양형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양형인자를 선정한 후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기본 성격에 따라 특별/일반인자, 가중/감경인자로 구분

- 양형인자의 제시를 통한 양형심리의 충실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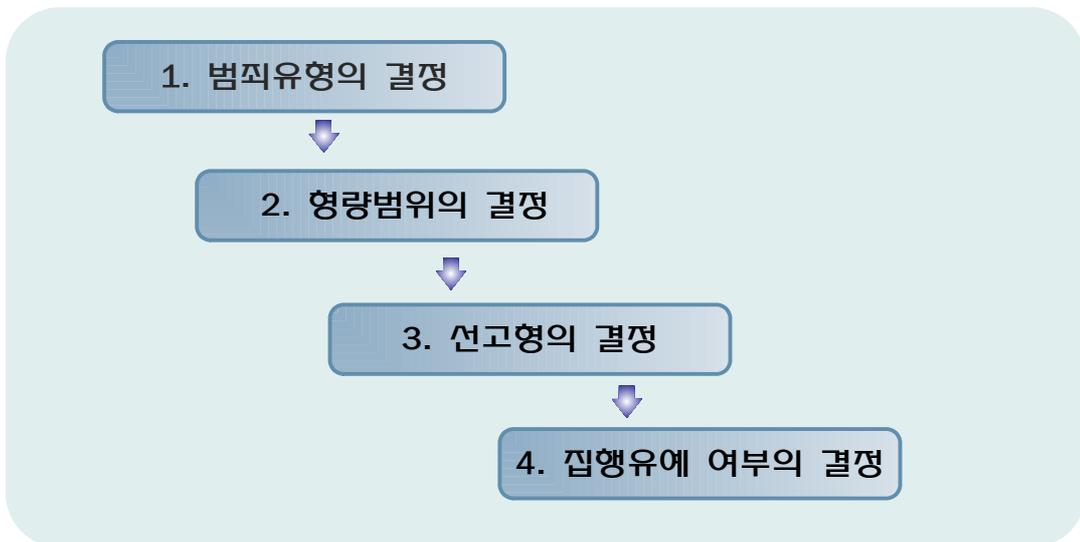
영역 결정	특별인자
선고형 결정	특별인자·일반인자 종합

- 양형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원칙 마련
  - 행위자에 관련된 요소보다 범죄행위 자체에 관련된 요소를 중하게 고려

#### 다. 경합범 및 집행유예 기준 설정

- 다수범죄 처리기준(경합범 기준) 설정을 통한 양형기준 적용 대상 확대
  -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에 적용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경합된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의 준수를 권고
- 집행유예 기준 설정을 통한 양형편차 시비 해소 도모
  - 개별 범죄별로 집행유예 기준 설정
  - 형종 및 형량 기준과는 다소 다른 평가원칙 제시

※ 양형기준의 적용순서



## 4. 개별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

### 가. 살인범죄 양형기준

- 실무에서 중하게 고려되는 '범행의 동기'를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
  -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 피해를 당한 경우와 같이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제1유형)'과 경제적 대가 등을 목적으로 청부살인을 한 경우와 같이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제3유형)'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
- 존속살해는 살인과 형량범위가 유사하므로 별개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특별가중인자로 처리
- 살인미수죄는 형량범위의 차이를 고려하여 살인기수죄의 권고형량범위를 일정 비율로 감경하는 서술식 기준 적용

제1유형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제2유형	보통 살인
제3유형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 나. 뇌물범죄 양형기준

- 뇌물수수과 뇌물공여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설정
  - 뇌물액을 기준으로, 뇌물수수의 경우 6가지 유형으로, 뇌물공여의 경우 4가지 유형으로 분류
- '수뢰 관련 부정처사'는 특별가중인자로 처리
-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합산한 뇌물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는 이른바 '합산원칙'을 채택

-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집행유예 결정 시 고려 배제 사유 제시
  - ① 신분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 ② 부정한 이익의 몰수, ③ 본건 관련 징계처분

뇌물 수수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제6유형	5억 원 이상
뇌물 공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제4유형	1억 원 이상

#### 다. 성범죄 양형기준

- 피해자 연령과 범행수법·결과 등을 기준으로 유형 분류
  - ① 일반적 기준(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②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③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구분
- 13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관해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강간의 경우 감경영역에서도 실행 권고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강도강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제추행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등/의제강간
		강제유사성교
		강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일반강간,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강제추행 등/의제강간
		강제유사성교, 강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 라. 강도범죄 양형기준

- 성범죄 양형기준과 일관된 분류 원칙을 적용하여, 범행수법·결과 등을 기준으로 유형 분류
  - ① 일반적 기준, ②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③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④ 상습·누범강도로 구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특수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특수강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도치사
	강도살인
상습·누범 강도	상습·누범강도

마.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횡령과 배임에 관하여 하나의 기준표를 제시
  - 횡령·배임금액(이득액)을 기준으로 5가지 유형으로 분류
  - 업무상 횡령·배임을 기본 유형으로 설정
- 기업범죄에도 동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설정
  - 50억 이상 횡령·배임에 관해, 기본영역에서 원칙적인 실행 권고
-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는 이른바 ‘합산원칙’을 채택

제1유형	1억 원 미만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 바. 위증·무고범죄 양형기준

- 위증범죄는 범행의 목적을 기준으로, 위증과 모해위증으로 유형 분류
- 무고범죄는 범행의 내용을 기준으로, 일반 무고와 특가법상 무고로 유형 분류

위증범죄	제1유형	위증
	제2유형	모해 위증
무고범죄	제1유형	일반 무고
	제2유형	특가법상 무고

#### 5. 시행 계획

- 2009. 5. 7. : 양형기준 관보 게재
- 2009. 7. 1. : 양형기준 시행
  - 위 일자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에 관하여 적용

## II. 2009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 보고

### 1. 개요

- 양형위원회 제14차 회의(2009. 1. 20.)에서 의결된 2009년 전문위원 연구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 전문위원단에서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연구업무를 수행할 계획

### 2. 전문위원 연구계획

## 가. 제1주제

### (1) 주제명

- 구체적 양형기준안 연구

### (2) 연구 목적

- 양형위원회 심의·의결을 위하여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

### (3) 연구 내용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대한 양형실무 분석
  - 양형실무에 나타난 형종 및 형량 통계 등 분석
- 양형실무에 대한 규범적 조정
  - 과거 형량의 상향 여부 등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양형인자 선정
  - 특별/일반 및 가중/감경 양형인자
- 대상범죄별 집행유예 기준 및 경합범 처리 방식 수립
- 양형기준안 작성 및 수정

### (4) 연구 시기

- 2009년 1월 ~ 2월 중순

## 나. 제2주제

### (1) 주제명

- 양형기준 매뉴얼 작성

### (2) 연구 목적

- 양형기준 설정에 따른 양형기준 매뉴얼을 작성·보고함으로써 양형기준을 최종 점검하는 동시에 대외적인 예측가능성을 제고

### (3) 연구 내용

- 대상범죄별 양형기준 매뉴얼 작성
  - 양형기준의 적용범위
  - 양형기준의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유형,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

### (4) 연구 시기

- 2009년 2월 ~ 3월 중순

## 다. 제3주제

### (1) 주제명

- 양형기준안 효과 분석

### (2) 연구 목적

- 양형기준안이 사법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한된 사법자원 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도록 함

### (3) 연구 내용

- 수용인원의 변화와 그에 따른 양형기준의 적정성 효과 분석
- 보호관찰소 등 교정 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양형기준의 관계

### (4) 연구 시기

- 2009년 2월 ~ 4월 중순

#### 라. 제4주제

##### (1) 주제명

- 양형심리절차 개선 방안

##### (2) 연구 목적

- 양형기준의 정확한 적용을 위한 바람직한 양형심리절차를 모색

##### (3) 연구 내용

- 새로운 양형심리절차 연구
  - 공판절차이분론 등
- 인적, 물적 재판여건을 고려한 양형인자 심리 방식
- 양형기준의 적용 현황에 대한 자료수집 방안
- 양형심리방식과 양형기준의 상호 관련성

##### (4) 연구 시기

- 2009년 3월 ~ 5월 중순

#### 마. 제5주제

##### (1) 주제명

- 재범예측성 판단

##### (2) 연구 목적

- 재범예측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집행유예 기준 설정 시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

### (3) 연구 내용

- 재범추적 조사를 통한 재범예측인자 추출
  - 일반적 재범예측인자
  - 특정 범죄에 대한 재범예측인자
- 재범예측성 판단 기준
- 재범예측 연구의 양형기준 반영 가능성

### (4) 연구 시기

- 2009년 3월 ~ 5월 중순

## 바. 제6주제

### (1) 주제명

- 가석방 실태 분석

### (2) 연구 목적

- 가석방 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양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양형정책 수립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확보

### (3) 연구 내용

- 우리나라 가석방의 운용 현황
  - 범죄인의 실제 복역 기간
  - 가석방자의 재입소 현황
- 가석방과 양형의 상관 관계
- 양형기준제 도입에 따른 가석방 제도 개선방안

(4) 연구 시기

- 2009년 4월 ~ 7월 중순

사. 제7주제

(1) 주제명

- 형사실체법 정비 방안

(2) 연구의 목적

- 양형의 출발점이 되는 형사실체법 중 불합리한 부분을 연구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

(3) 연구의 내용

- 형벌 체계의 합리화 방안
- 특별법의 내용 또는 체계상의 문제점
- 특별법 남용 및 법정형 불균형 현상 개선 방안
- 형사실체법과 양형기준의 관계 분석
-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유형에 대한 부분으로 범위를 한정

(4) 연구시기

- 2009년 4월 ~ 7월 중순

아. 제8주제

(1) 주제명

- 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2) 연구의 목적

- 2기 양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범죄에 관하여 연구

(3) 연구의 내용

-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범죄를 결정하는 원칙 및 고려사항
- 구체적인 범죄유형 선정

(4) 연구시기

- 2009년 9월 ~ 10월 중순

자. 제9주제

(1) 주제명

- 양형기준 적용 현황 분석

(2) 연구의 목적

- 양형기준의 적용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추가 양형기준 설정 또는 양형기준 수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확보

(3) 연구의 내용

- 양형기준 적용 현황 파악
  - 양형기준 적용 이탈율과 이탈 원인 분석
- 양형기준 적용으로 인한 양형실무 개선 효과
- 양형기준의 실무 적용상의 문제점
- 양형실무 적용의 문제점을 고려한 양형기준 개선 방안

#### (4) 연구시기

○ 2009년 10월 이후

### 3. 연구계획안 정리

#### 가.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순번	연구과제	연구시기	분장
1	구체적 양형기준안 연구	1월 ~ 2월 중순	분담
2	양형기준 매뉴얼 작성	2월 ~ 3월 중순	분담
3	양형기준안 효과 분석	2월 ~ 4월 중순	2팀
4	양형심리절차 개선 방안	3월 ~ 5월 중순	1팀
5	재범예측성 판단	3월 ~ 5월 중순	2팀
6	가석방 실태 분석	4월 ~ 7월 중순	1팀
7	형사실체법 정비 방안	4월 ~ 7월 중순	분담
8	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9월 ~ 10월 중순	분담
9	양형기준 적용 현황 분석	10월 이후	1팀

※ 음영처리된 부분은 제1기 양형위원회 수행 과제(이하, 같음)

#### 나.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에 따른 위원회 안건(예상)

회의	일시	안건
14차 회의	2009. 1. 20.	● 양형기준안(의결 안건)
15차 회의	2009. 2. 19.	● 양형기준안(의결 안건)
16차 회의	2009. 3. 23.	● 양형기준안(의결 안건) ● 양형기준안 효과분석 I (보고 안건)
17차 회의	2009. 4. 13.	● 양형기준안(의결 안건) ● 양형기준 매뉴얼 작성(보고 안건) ● 양형기준안 효과분석Ⅱ(보고 안건)
임시 3차 회의	2009. 4. 24.	◎ 양형기준 최종 의결
18차 회의	2009. 5. 7.	● 양형심리절차 개선 방안(보고 안건) ● 재범예측성 판단(보고 안건)
19차 회의	2009. 7. 20.	● 가석방 실태 분석(보고 안건) ● 형사실체법 정비 방안(보고 안건)
20차 회의	2009. 9. 21.	◎ 전문위원단 연구업무 진행
21차 회의	2009. 10. 19.	● 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의결 안건)
22차 회의	2009. 12. 21.	● 양형기준 적용 현황 분석(보고 안건)

※ 안건명은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Ⅲ.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18차 전체회의는 양형위원회 제18차 회의 결과 및 전문위원 연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최하기로 함